

# 화재리스크관리와 보험요율의 연계방안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2018.5.15(화)

---

# 목차

- I. 검토 필요성
- II. 화재리스크의 현황 및 평가
- III. 보험의 화재리스크 관리기능
- IV. 보험요율의 연계방안

# I. 검토 필요성

- 대형 화재 사고시 주로 의무보험 도입 중심 리스크 재무대책을 도입, 화재예방과 손해축소 등 리스크통제 대책은 더디게 진행
- 또한 손보업계는 화재보험계약 등에서 계약자 리스크관리와 연계한 보험요율을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적게 사용하고 있고 장기간 동안 지속하여 왔음
- 보험요율의 리스크 관리 유도, 대형사고 재발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대형 화재사고 발생 현황

1971년

• 대연각 호텔 163명 사망

1972년

• 서울시민회관 76명 사망

1999년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23명 사망
- 인천호프집 56명 사망

2008년

• 이천 냉동창고 40명 사망

2017년

• 제천 스포츠센터 29명 사망

2018년

• 밀양 세종병원 51명 사망

## 화재리스크 담보 의무보험 도입

1973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2017년 대물배상 추가)

2013년

-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다중이용배상보험)

2017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배상보험)

## II. 화재리스크의 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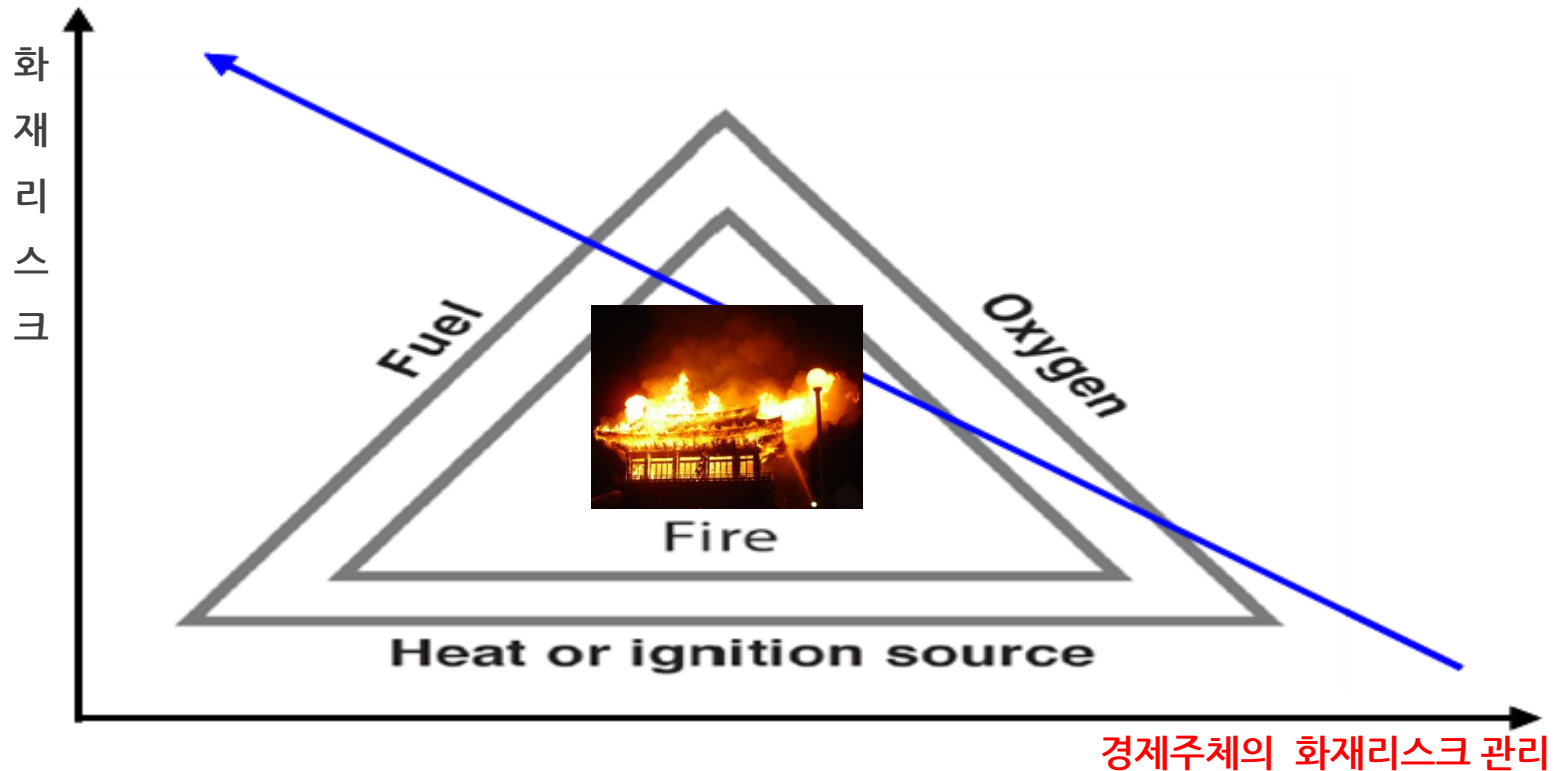
---

1. 화재리스크 영향
2. 화재리스크 발생현황
3. 화재리스크관리 효과

## II-1. 화재리스크 영향(1/2)

- 화재리스크(fire risk)는 화재가 발생하여 경제주체가 경제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

$$\text{화재리스크} = f(\text{연소물질, 산소, 발화원}) \times f(\text{소유자의 리스크관리 정도})$$



## II-1. 화재리스크 영향(2/2)

- 화재시 직접손해, 간접손해, 기타 손해 발생, 건물 용도에 따라 손해 종류와 규모에 격차 발생

손해의 종류			주택물건	일반물건		공장물건
				사무실	상업용	
직접손해	재물손해 (property loss)	건물, 시설물	●	●	●	●
		기계 등 동산	○	◎	○	●
	배상책임손해 (liability loss)	대인배상	○	●	●	◎
		대물배상	○	◎	◎	◎
	당사자 인적손해(personal damage)	●	○	○	○	
간접손해	휴업손해(interruption loss)	○	●	●	●	
기타손해	행정비용(administration expense)		○		○	
	법률비용(legal expense)		○		○	

주 : ● > ◎ > ○

- 또한 동일용도, 크기의 건물일지라도 점유자의 리스크관리 인식, 실행에 따라 큰 격차 발생
- 제천 스포츠센터(29명 사망)/밀양세종병원(51명 사망) vs 연세 세브란스병원

## II-2. 화재리스크 발생현황(1/3)

- 2016년 4만 3천건의 화재 발생(2009년 대비 매년 1.4%감소), 공장물건만 매년 1.4% 증가
  - 인적피해는 모든 용도건물에서 화재건수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
  - 재산손해는 일반(+4.8%), 공장(+4.8%)의 손해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 되고 있음

[ 2016년 용도별 화재발생 및 피해현황 ]

(단위 :%)

구분	화재발생		사망자		부상자		재산손해	
	건수	CAGR	명	CAGR	명	CAGR	억원	CAGR
주택	11,541	-0.5	193	-2.0	884	-1.6	481	-5.4
일반	10,193	-2.2	42	-2.6	568	-2.6	1,132	4.8
공장	5,503	1.4	23	-4.6	231	-0.4	2,211	4.8
기타	16,176	-2.3	48	-4.1	341	-2.2	383	-2.8
전체	43,413	-1.4	306	-2.6	2,024	-1.8	4,206	2.3

주 : 1)기타는 자동차 등 시설물의 화재사고임.

2) 증감율은 2009년 대비 누적평균증감율임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화재정보센터(<http://www.nfds.go.kr/index.jsf>)의 화재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II-2. 화재리스크 발생현황(2/3)

- 2017년 현재 인구천명당 0.859건 화재 발생, 2009년(0.96)대비 매년 1.4%감소 추세
- 인적피해 : 인구 10만명당 0.671명 사망, 4.27명 부상, 매년 2.6% 감소추세
- 재산피해액 : 2016 GDP의 0.026%, **매년 2.3% 증가**, 간접손해 포함할 경우 더 클 것임

[ 2009년 대비 2016년의 화재발생건수, 재산피해액의 증감추이 ]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CAGR
화재발생	0.960	0.845	0.879	0.862	0.812	0.830	0.871	0.847	0.859	-1.379
사망자수	0.829	0.613	0.527	0.532	0.609	0.640	0.496	0.597	0.671	-2.623
부상자수	4.951	3.816	3.727	4.426	4.331	4.298	4.103	3.950	4.270	-1.830
재산피해	0.022	0.021	0.019	0.021	0.030	0.027	0.028	0.026	-	2.326

주 : 화재발생건수는 인구 천명당 임. 사망자수 및 부상자수는 인구10만명당임. 재산피해는 GDP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임

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화재정보센터(<http://www.nfds.go.kr/index.jsf>)의 화재통계를 이용하여 작성



## II-2. 화재리스크 발생현황(3/3)

- 우리나라의 화재리스크(화재발생, 피해정도)는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는 0.85건으로 미국(4.14), 프랑스(4.48), 영국(3.77)에 비해 낮으나 일본(0.36)보다 높음
  - GDP대비 재산피해는 0.2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데이터로 수정할 경우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한국과 주요국의 화재특성치 비교(2011~ 2015년 평균) ]

(단위: 건,명,%)

국가별	천명당 화재건수	인적피해(10만명당)		재산피해(1993-1995)	
		사망자	부상자	직접손해	간접손해
한국	0.85	0.56	4.18	0.025	-
일본	0.36	1.30	5.40	0.100	0.016
미국	4.14	1.00	5.10	0.130	0.012
프랑스	4.48	0.50	21.50	0.230	0.026
영국	3.77	0.60	15.90	0.140	0.019
이탈리아	3.58	0.30	0.40	0.240	0.014
스웨덴	2.43	0.40	3.60	0.230	0.009
뉴질랜드	2.55	0.10	1.80	0.170	-
베트남	0.02	0.10	0.20	-	-
싱가폴	0.90	0.10	3.10	-	-

주 : 재산피해는 GDP비중임

자료 : 1) 損害保険料率算出機構(1999), 日本と海外における火災危険の比較考察, Risk 54, p.44

2)Center of Fire Statistics(2018), World Fire Statistics, CTFE 2017 No.22

## II-3. 화재리스크관리 효과(1/2)

- 화재로 인한 인적, 재산피해는 소화설비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남
  - 특히, 재산피해는 인명피해보다 훨씬 더 큰 차이 발생해 소화설비 유효성 영향이 큼
  - 화재발생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해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 등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함

[ 화재시 소화설비 작동여부별 피해결과 차이(2016년) ]

소화설비 작동여부	인적피해 (명)				재산피해액 (백만 원)	
	사상자수	화재 1건당 사상자수			피해총액	1건당 피해액
		사망	부상	계		
효과적으로 작동함	44	0.002	0.084	0.086	7,319	14.32
소규모로 작동하지 않음	25	0.002	0.050	0.052	521	1.08
작동하지 않음	12	0.035	0.105	0.140	57,048	663.35
확인 불가	9	-	0.273	0.273	7,997	242.33
해당사항 없음	1,934	0.007	0.039	0.046	347,751	8.22
합 계	2,024	0.007	0.040	0.047	420,636	9.69

자료: (舊)국민안전처(2017), 『2016년도 화재통계연감』, p.140

## II-3. 화재리스크관리 효과(2/2)

- 또한 일본 동경도의 화재패턴별 피해양상 분석 결과, **조기발견, 조기속보, 조기소화의 경우 가장 적은 피해 발생**(건수 비중 50%, 사상자수는 전체의 73%수준, 재산피해는 8.2% 수준)
- 따라서 화재리스크 경감을 위해서는 소화설비의 설치 및 작동관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일본 동경도의 소화설비 작동여부별 인명 및 재산피해 차이(1995~ 2002) ]

(단위: 명, 천 엔)

화재패턴				화재1건당 피해			
조기발견	조기속보	초기소화	화재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상자수	재산피해
○	○	○	2,055	0.002	0.205	0.207	213.5
×	○	○	376	0.011	0.303	0.314	753.6
○	×	○	390	0.000	1.310	1.310	215.3
○	○	×	909	0.017	0.333	0.350	2,476.9
×	×	○	56	0.000	0.143	0.143	468.3
×	○	×	506	0.097	0.492	0.589	6,219.9
○	×	×	189	0.030	0.201	0.231	18,892.4
×	×	×	107	0.019	0.299	0.318	23,060.0
계			4,568	0.017	0.266	0.283	2,603.2

자료 : 東京消防庁火災パターンによる被害状況等の分析, p.85

## III. 보험의 화재리스크 관리기능

---

1. 화재보험의 기능
2. 손해보상기능(리스크재무)
3. 손해방지기능(리스크통제)

## III-1. 화재보험의 기능

- 화재보험은 손해보상과 같은 1차적인 기능(primary function)과 손해방지 등 리스크관리 촉진과 같은 2차적인 기능(secondary function) 수행

보험의 기능 및 효과		보험인수 업무			자산운용 업무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요율	
본질적 기능	손해보상기능		●		
	계획수행 등 불확실성 제거		●		
	계약자간 <u>리스크</u> 공유 분산	●	●	●	
부수적 기능	계약자의 손해방지 촉진		●	●	
	사회에 필요한 자본 제공				●
	개인 및 사회의 효율성 증진(걱정해소)		●		
	<u>경제진보</u> (인적 물적 자원보호, 재투자)		●		●

- 보험요율 : 예측 평균손해액(기본요율) + 변동성 (계약자별 리스크관리 정도에 따른 할인할증 적용)

$$\begin{aligned}
 E(\text{순보험료}) &= E\left(RP: \frac{\text{사고건수}}{\text{계약건수}} \times \frac{\text{손해액}}{\text{사고건수}}\right) + K \text{Var}(RP) \\
 &= E(RP: \text{사고발생확률} \times \text{건당손해액}) \pm \text{할인할증}
 \end{aligned}$$

## III-2. 손해보상기능(리스크재무): 재물손해

- 2016년 화재로 인한 재물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지출한 보험료(화재보험, 장기손해, 재산종합)는 1조 1,600억 원으로 매년 5.9% 증가하고 있으나 재산손해 증가율보다 낮음
- 2016년 화재발생 건당 지출한 보험료는 3,963만 원으로 매년 4.4% 증가, 재산손해 대비 지급보험금 비율(보상율)은 155%로 과거에 비해 낮아 지고 있음

[ 화재리스크 담보 보험계약의 건당보험료 및 보상율 ]

(단위: 건, 억 원, %)

연도별	화재발생		화재담보 보험가입		건당보험료 (③/①)	보험보상율 (④/②)
	발생건수①	재산피해②	수입보험료③	지급보험금④		
2010	26,904	2,282	8,209	3,939	0.3051	173
2011	27,033	2,176	9,993	3,356	0.3697	154
2012	25,563	2,526	10,231	4,105	0.4002	163
2013	23,868	3,942	10,624	4,515	0.4451	115
2014	25,811	3,701	10,877	4,886	0.4214	132
2015	26,303	3,824	11,286	5,661	0.4291	148
2016	29,280	3,845	11,604	5,951	0.3963	155
CAGR	1.42	9.09	5.94	7.12	4.45	-1.81

주 : 1) 보험은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아파트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 장기재물보험(경과위험보험료)의 합임.

2) 화재발생은 자동차 항공기 등을 제외한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것임

자료 : 1) (구) 국민안전처 「2016년도 화재통계연감」에서 작성

2)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통계연도」를 이용하여 작성

## III-2. 손해보상기능(리스크재무): 배상책임손해

- 특수건물, 다중이용업소, 재난취약시설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가입. 기타 건물의 소유자는 임의보험에 가입
- 이들 의무보험은 상품구성과 운영에서 차이가 있음(특수건물은 화재보험의 신배책 특약, 기타 보험은 독립상품), 향후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으로 통일을 검토

[ 화재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의무보험 ]

보험명칭	근거법	가입대상/담보손인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시행시기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 험가입에관한 법률	특수건물(18개 업종)	-사망후유장해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대물배상 : 1 사고 당 10억 원	1974.6.30
		화재		
다중이용시설배 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시설(23개)	-사망후유장해 1억 원 부상 2천만 원 -대물배상 : 1 사고 당 1억 원	-신규:2013.2.23 -기존:2013.8.22
		화재, 폭발		
재난배상 책임보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재난취약시설(19개)	-사망후유장해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대물배상 : 1 사고 당 10억 원	-신규 2017.1.4. -기존 2017.7.7
		화재, 붕괴, 폭발		

### III-3. 손해방지기능(리스크통제): 개요

-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계약자의 리스크통제 효과를 역할기능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험요율제도 도입, 운영(등급요율, 개별요율/성과요율: 경험요율, 소급요율, 예정요율)
- 보험요율별 계약자 리스크관리 영향은 큰 차이(예정요율 > 소급요율 > 경험요율 > 등급요율)

[ 화재보험 요율과 리스크통제 관련성 ]

		순위보험료 =	평균순보험료 +	평균순보험료 변동성	비고		
계약자 적용 보험 요율	등급요율 (매뉴얼요율) =		기본요율		건물구조, 건물용도 (주택, 일반, 공장)		
				+ 할증요율	고층건물, 위험품 재고자산		
				- 할인요율	소화설비, 공지거리, 불연내장재		
	개별 성과 요율	소급요율	현재 보험기간의 실적 손해율로 차등			소급적용	
		경험요율	과거 3년간 실적 손해율로 차등			우량 할인	특수건물할인
		예정요율	연소하중(Fuel Load), 방화설비(Protection), 방화관리체제(Management)				



### III-3. 손해방지기능(리스크통제): 소화설비 할인

-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와 배상책임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중 소화설비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화재보험만임
  - 보험개발원의 소화설비규정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한 계약자에 대해 화재보험협회의 설비검사를 거쳐 소화설비별로 할인율을 적용(설비별 합산 최대 60% 할인)
- 2016년 현재 2,040건이 소화할인을 받고 있는데 건물규모가 큰 특수건물이 97.6%로 대부분임

[ 화재보험 소화설비 할인 적용 현황 ]

(단위: 건, %)

년도	특수건물			비특수건물			합 계		
	신청건수	할인건수	적용비율	신청건수	할인건수	적용비율	신청건수	할인건수	적용비율
2015	30,147	1,820	6.0	84	56	66.7	30,231	1,876	6.2
2016	33,209	1,992	6.0	56	48	85.7	33,265	2,040	6.1

주 : 적용비율은 할인건수/신청건수

자료: 화재보험협회(2017),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 pp.174-175

## III-3. 손해방지기능(리스크통제): 리스크관리연계 할인제도

### 1 화재보험

- 특수건물 할인 : 건물소유주나 사업자의 화재리스크관리 상황과 연계하여 할인율을 차등 적용
- 우량할인율 : 공장물건 중 보험가입금액 20억 원 이상 계약, 손해율, 리스크관리상태를 평가하여 최대 25% 할인

### 2 의무보험

- 다중이용시설배상책임보험 : 소방서가 안전관리업무 이행실태 평가, 보험료 차등 (법 제21조)
  - 우수한 경우 평가결과를 출입구에 부착
  - 보험회사는 화재발생 빈도, 영업장 면적, 법령위반여부, 안전관리 우수업소 여부에 기초하여 보험료 차등

### 3 비통계요율 적용

- 참조순보험요율서가 없는 종합보험의 경우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

### III-3. 손해방지기능(리스크통제): 보험요율의 리스크관리 연계성 평가

- 계약자의 리스크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보험요율제도가 많은 종목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요율 확대와 실효성있는 요율제도 적용방안 필요

[ 리스크통제 연계 보험요율 적용 현황 종합 ]

손해구분	보험종목		참조요율	소화설비할인	리스크관리연계 성과요율
재물 및 기업휴지 손해	화재보험	주택물건	○	○	×
		일반물건	○	○	×
		공장물건	○	○	○
	재산종합		×	×	×
배상책임 손해	의무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	○	○	○
		기타	○	×	○(다중이용)
	임의보험		○)×	×	×

- 향후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인력 확충과 경험통계의 축적을 통해 다양한 요율적용 플랜을 운영하여 보험시장 확대를 도모할 필요

## IV. 보험요율의 연계방안

---

1. 소화설비 할인제도 개선
2. 개별/성과요율제도 운영 확대
3. 리스크관리 인식 개선
4. 리스크관리 컨설팅 제공

## IV-1. 소화설비 할인제도 개선(1/3)

- 화재보험에서 소화설비 설치, 유지관리가 일반건물에 비해 양호한 특수건물의 경우에도 소화설비 양호률이 79%에서 98%내에 있음
  - 이는 계약체결 시에 소화설비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지의무와 위험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음

[ 2016년 특수건물 소화설비 양호률 ]

(단위: 건, %)

할인 적용 소화설비			할인 비적용 소화설비		
설비장치	설치건수	양호율	설비장치	설치건수	양호율
소화기	27,621	98.2	물분무장치	185	90.3
옥내소화전	25,086	91.0	비상경보장치	6,926	86.3
옥외소화전	4,355	87.5			
스프링클러설비	10,901	90.9			
포소화설비	706	85.8	비상방송설비	18,946	90.8
가스계 설비	3,633	79.2	안전관리실태	27,621	39.1
자동화재탐지장치	27,333	59.9			
자동화재속보장치	5,936	81.2			
소방펌프	267	92.1			

자료: 화재보험협회(2017),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 pp.139-149

## IV-1. 소화설비 할인제도 개선(2/3)

- 이러한 우려는 실제 보험통계에서 확인되고 있음. 2016년 특수건물의 화재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화설비할인 받은 건물의 작동율이 현저히 낮고, 재산피해에서도 작용여부에 따라 큰 차이 발생
- 자동소화설비의 경우 소화설비할인 받은 건물 중 16.7%만 작동하고, 재산피해도 50%이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설비가 작동되도록 유지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특수건물의 소화설비 작동여부별 재산피해 차이 ]

(단위: 건, %)

소화설비 구분	화재발생건수		소화설비 <u>작동율</u>		재산피해 <u>차이를</u>	
	<u>특거전체</u>	<u>소화설비 할인건물</u>	<u>특거전체</u>	<u>소화설비 할인건물</u>	<u>특거전체 (작동/미작동)</u>	<u>소화설비할인 (작동/할인합계)</u>
소화기	1,162	11	51.3	54.5	69.5	29.8
옥내소화전	1,084	2	36.3	100.0	63.8	100.0
자동소화설비	663	6	21.4	16.7	46.7	20.9
자동탐지설비	1,150	120	31.9	39.2	82.0	81.3

자료 : 화재보험협회 제공

## IV-1. 소화설비 할인제도 개선(3/3)

- 향후 소화설비 할인을 화재시 실제 작동여부에 따라 연계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

### 소화설비 할인특약 규정(fire fighting equipment endorsement) 도입

- 선할인 : 소화설비를 검사하여 소정의 할인을 계약시 적용, 작동하지 않은 경우 할인보험금 회수
- 후할인 : 보험기간 종료 시점까지 화재사고가 없거나 사고시 정상작동시만 보험료 할인

### 소화설비의 실질적 작동 유도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은 소화설비 할인을적용시 설비 자체의 성능과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평가
- AIG는 Home protect 보험에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가 장치된 경우 연간 점검회수, 주야간 소방요원의 상주여부 등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보험료 할인
- 국내에도 보험기간 중도에 보험회사의 점검 가능조항 도입

## IV-2. 개별/성과요율제도 운영 확대

- 성과요율제도를 화재보험 공장물건(6,779건)에서 대규모주택, 일반, 재산종합 등 대규모계약으로 확대

(단위: 건, 점, %)

구분	합인건수	평균점수			우량할인율	
		손해율평가	안전평가	계	건물	동산
비특수건물	538	990.1	560.8	1,550.9	18.1	18.1
특수건물	6,241	986.3	599.5	1,585.8	9.2	16.3
합 계	6,779	986.6	596.4	1,583.1	9.9	16.4

주 : 특수건물은 건물에 대해 최대 10%만 적용함

자료 : 한국화재보험협회 제공

- 일본 손보사는 대규모 건물에 적용, 미국은 기업성 및 상업용 계약에 대해 적용을 규정화

### 일본 손해보험회사의 리스크평가 요율제도

일신화재  
해상보험

• 멘션소유자가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멘션안전관리 적정화 진단 평가등급에 따른 할인 제공

손보재팬

• 부보물건의 건축구조, 연소하중, 방화설비, 방화관리체계, 과거 손해율 및 이재경력에 따라 차등

에이스  
보험

• 공장, 사무실, 점포, 병원, 학교 등의 화재보험  
• 계약자 리스크관리 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료 최대 50% 할인

### 미국의 성과요율 적용 종목

워싱턴 주

뉴욕 주

보험종목

• 상업용 보험: 자동차, 범죄, 신용보증, 배상책임, 내륙 운송, 종합담보, 재물

• 모든 상업용보험  
•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공공기관보험

적용형태

• 예정요율

• 경험, 예정, 소급요율

차등요율폭

• ±25%

• ±25%



## IV-3. 리스크관리 인식 개선

### 1 리스크관리 표준규격 제정

- 국가, 리스크관리 표준규격을 제정·공표 → 경제주체, 리스크관리 수행 → 사회적 비용 최소화, 국가 경쟁력 제고
  - 국제표준기구(ISO 31000 Risk Management-principles and guidelines, 31010 Risk Management-Risk assessment Techniques, Guide 73 Risk Management-Vocabulary, 2009)
  - 일본(JISQ 31000, 2010), 호주/뉴질랜드(AS/NZS 31000, 2009), 오스트리아 ONR 49000-49003, 2014), 미국(2004)

### 2 계약자의 질문서 답변의무, 안전관리 준수 의무 도입

- 보험자의 질문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의무
  - 프랑스(1989년), 독일(2007년), 일본(2008년): 보험자 질문사항 성실 고지의무제도 도입
  - 재물보험계약의 경우 안전관리 준수 의무 규정 도입 (중국 보험법 제51조 피보험자의 안전규정의 준수)

### 3 방화인증제도 도입

- 일본 동경도 우량방화대상물인증표시제도(2006)
  - 건물단위로 방화시설 등을 평가하여 우량 건물에는 인증표시 부착
  - 소방청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 공표



## IV-4. 리스크관리 컨설팅 제공

### 화재에 대한 리스크재무 기능에 추가하여 리스크통제 기능의 역할 강화 필요

- 화재로 인하여 재산손해와 제3자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리스크관리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임
- 보험계약인수시 계약자의 화재리스크를 평가하고 적정한 보험금액 유도, 성과요율제도 적용 등에 대한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손보사의 리스크컨설팅 서비스 제공사례

- MA&AD : 전사적 리스크관리 규격에 따라 업종별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관련 컨설팅 서비스 실시
- 아이오이 닛세이동화손보 : 기업재산종합보험 계약자의 리스크관리할인(최대 40%)을 평가하면서 리스크컨설팅서비스를 부대하여 제공

---

**감사합니다**